「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3. 9. 4. 개정 판 (시행 2023. 4. 19.) → 2025. 2. 27. 개정 판 (시행 2025. 3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169/compare?from=1462&to=1635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3:54:2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구성) 1. 위원회는 위원장(장애학생지원센터장)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2.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,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. 〈개정 2012-11-26〉 〈개정 2016-02-29〉 3.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. 교수지원팀장, 건축안전관리팀장, 총학생회복지부장,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2-11-26〉 4.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. 5.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.	**제17조(구성)** 1. 위원회는 위원장(장애학생지원센터장)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2. 장애학생지원센터팀장이 서기가 되며,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. 〈개정 2012-11-26〉 3.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. 교수지원팀장, 건축안전관리팀장, 총학생회복지부장,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2-11-26〉 4.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. 5.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"를 "장애학생지원센터팀장이"로 하고, "2012-11-26〉 〈개정 2016-02-29〉"를 "2012-11-26〉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